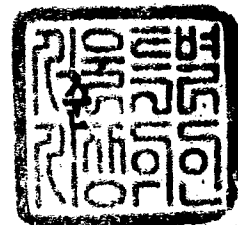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중소기업시설자금지원사업추진지침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조



서울특별시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추진지침개정지침안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동 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의 세부사항인 용자대상, 용자조건, 용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가. 서울특별시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추진지침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시설자금지원사업 추진지침으로 변경함.
- 나. 시설자금의 용자대상을 확대하고 용자조건 및 용자절차를 규정함.
 -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 (안 제9조).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안 제16조).
 - 시장재개발사업자, 공동창고 건립사업자, 점포시설 개선사업자 (안 제19조).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추진지침개정지침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추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시설자금지원사업추진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동 조례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시설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의 용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전업율'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2.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3. '시장재개발'이라 함은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현대화 하기 위하여 재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4. '소규모점포'라 함은 양관점, 할인점, 종합점, 전문점 및 편의점, 슈퍼마켓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소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으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을 제외한 소매점을 말한다.
5. '공동창고'라 함은 소매업의 연쇄화·협업화를 촉진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소매업자가 공동으로 상품을 보관, 분류, 포장, 가공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재무제표'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말한다. 다만, 재무제표의 관할 세무서장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신고예정 재무제표로 갈음하되, 추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가동기간'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승인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자금의 용자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청자격) 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조건부 공장은 제외)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2.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자
3. 휴·폐업중인 자
4.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공산품 제조업 전업율이 50% 미만인 자

제5조(용자신청) 자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별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기준) ① 시장은 용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소정의 평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규모를 감안하여 용자대상기업, 용자규모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용자신청서 접수, 사업타당성 평가, 용자대상기업 선정, 용자 규모 심의업무 등을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유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기간등) 시장은 자금용자신청에 대하여 년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금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8조(용자승인 통보) ① 시장은 용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용자신청업체, 자금관리은행 및 대출취급 은행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용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한은 수정·보완일부부터 기산한다.

제 2 장 사업별 용자승인 및 지원

제 1 절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업

제9조(지원대상등)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자금의 사업별 지원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용자신청)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자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신청서 및 별지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자승인 기준) ① 시장은 용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및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지역대책협의회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평가 및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지원 제외대상) 시장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승인된 업체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경고에서 정한 만료일로부터 1년간)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및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자(경고에서 정한 만료일로부터 1년간)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금액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13조(자금 사정기준) 시장이 용자신청업체의 용자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소요자금 사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산시설은 전적서 또는 계약서상에 표시된 시설구입가격 (자체 제작시설은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구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 이내
2. 외국산시설은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류상 CIF 이외의 가격이 표시된 경우에는 신청서류상 표시가격의 100% 이내. 단, 외국산시설중 국내구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국내 구입가격

3. 창업, 사업전환등의 공장설립 및 이전에 소요되는 건축비 및 부대시설 비용은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제14조(지원금액 결정) 용자신청업체에 대한 지원금액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정금액
에 규칙에서 정한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외국산시설에 대한 환율은 사정시점의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제15조(지원대상시설의 변경) ① 시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체 (이하 '승인
업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제4호에 의거 지원통보한 지원대상 시설의 변경승인을 신
청하는 경우 지원통보한 금액범위내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 승인할 수 있다.

② 대출취급은행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용자승인 결정통보한 업체의 지원대
상 시설에 대하여 지원통보한 금액범위내에서 시설의 수량, 규격, 소요금액 및 제작업
체 변경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취급은행은 조
치와 동시에 자금관리은행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자금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이를 시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중소기업 입지지원 사업

제16조(지원대상) 중소기업 입지지원 자금의 지원대상은 별표 3에 규정된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제17조(용자신청) 중소기업 입지지원사업 자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4호 서식
의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용자신청서 및 별지제5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
출 하여야 한다.

제18조(용자승인 기준등) ① 시장은 용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 공업배
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적합성, 지원자금규모 등을 검토한 후 용자승인을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

2.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임대목적의 사업자
 4. 사업계획에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탁아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자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 절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제19조(지원대상)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자금의 용자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 대상은 별표4와 같다

제20조(용자신청)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 6호 서식의 용자신청서 및 별지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후 관 리

제21조(사후관리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최초의 자금지원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년도부터 3년까지로 한다.

제22조(실적서 제출등) ①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이행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계획의 추진사항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기타 자금지원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경 명령

2.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

④ 사업전환사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대출일로부터 6월이내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계획 기간내에 사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23조(성과분석) 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또는 자급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 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 시장은 용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4. 대출취급은행

② 용자승인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시장은 용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2.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3. 주생산업종의 변경

4. 지원시설(단, 은행에 변경위입한 사항은 제외)의 변경

④ 승인업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계획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의 신규대비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변경사항의 증빙서류
6.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

⑤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신청을 받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계획의 승인취소) 시장은 승인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승인 및 자금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이 지침에 의한 이행촉구·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세채납, 부도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
6.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할 수 있다.

제27조(사후관리 업무위탁) ①시장은 사후관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완료 및 사업실적보고의 수리와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분석,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신청에 대한 수리·승인 등 사후관리업무를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유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 업무대상은 구조조정(시설개체)사업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기관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수리·승인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사유를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15조의 규정과 이 지침에 의하여 자금관리, 용자대상기업추천 및 사후관리업무 등을 중소기업 시설개선 지원과 관련한 유관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조례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보고사항 이외에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기타사항) 기타 이 지침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대출되었거나 대출하기로 확정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구조조정자금 지원대상사업

사업별	지 원 대 상
자동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계획 추진에 필요한 각종시설의 구입 또는 제작에 소요되는 기계장치·부품 및 자재구입비(기존시설 부품교체비용 제외)
정보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계획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컴퓨터시스템 구입비 ○ 주변기기 및 기계장치 구입비(부대시설비 포함) ○ 소프트웨어 구입비
기술개발 사업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을 사업화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구입 또는 제작에 소요되는 기계장치·부품 및 자재구입비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 산업기술향상기금, 국민투자기금(공히 기술개발부분에 한함)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사업화 ○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소등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하여 개발이 완료된 품목의 사업화 ○ 중소기업이 소유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통상실시권은 제외)의 사업화 ○ 외국과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개발한 품목의 사업화 ○ 위의 지원대상 이외의 품목으로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기계류·부품 및 소재 개발대상 품목으로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품목의 사업화 ○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품목의 사업화 ○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술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사업별	지 원 대 상
기술개발 연구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업체 또는 타기업과 공동개발된 기술 ○ 기타 신청기업 자체적으로 개발된 신기술 ○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전분품비, 기술도입비, 기술인력훈련비 외추가공비, 기술인증획득비, 기타경비)과 연구용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설자금 ○ 급형, 열처리, 주·단조, 도금, 염색가공, 용접, 계량기술등 산업기반기술 ○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기계류, 부품 및 소재 개발대상품목으로 고시한 품목 ○ 통상산업부장관이 공업기반기술사업으로 공고한 기술개발과제 ○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소등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개발과제 ○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이 개발추진하는 과제 ○ 유망수출상품 세계일류화사업 지정업체가 개발추진하는 과제 ○ 기타 통상부 및 과학기술처장관이 기술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창업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실시계획승인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시험계측기 ○ 공해방지시설 ○ 공장관리에 필요한 자동제어장치 및 기기 ○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기업중 독립적인 사업을 추진중인 자
사업전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환계획 추진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구입 또는 제작에 소요되는 기계장치, 부품 및 자재구입비와 공해방지시설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현저한 수요감소가 있거나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사업별	지 원 대 상
설비이전 사 업 지식서비 스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환경의 변동 등으로 수출이 극히 부진하거나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 신기술, 신제품의 출현 또는 기술수준의 현저한 낙후로 제품의 생산성, 성능 및 품질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사업 ○ 수입원자재의 확보난이 점증되거나 지속적인 가격상승 등으로 가격경쟁이 약화되었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사업 ○ 공해방지 및 안전대책등 규제의 강화에 따른 경영상 부담의 증대로 경쟁력이 약화되었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사업 ○ 대기업의 산업재편성과 관련하여 과생되는 저성장업종 및 업계의 과다한 참여로 생산설비의 과잉을 초래하거나 설비과잉이 예상되는 사업 ○ 제조원가에 대한 임금비중이 크고 지속적인 고임금 추세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사업 ○ 기타 사업전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해외나 지방공단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공장건설 및 설비 이전사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연구 및 개발업 ○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업 ○ 엔지니어링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

구조조정 지원자금의 평가기준

1. 용자승인업체의 선정기준

- 기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상태를 평가한 후 성장가능성과 사업타당성을 평가
- 기업의 건실도 평가 100점중 40점 이상으로 대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60점과) 사업타당성(4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업체를 선정

2. 기업의 건실도 평가기준

()안은 점수

구 분	평 가 항 목
재무상태 (60)	· 자본구성 (18), 유동성 (18), 수익성 (18), 안정성 (6)
사업현황 (30)	· 활동성 (8), 생산성 (12), 성장성 (10)
업 력 (10)	· 사업영위기간 (10)

3. 기업의 성장가능성 및 사업타당성 평가기준

()안은 점수

구 분	평 가 항 목
성장 가능성 (60)	시장성 (15) 제품의 성장유망성 (5), 판로 및 가격경쟁력 (5), 추정매출액 증가율 (5) 기술성 (20) R&D 비율 및 실적 (5), 기술인력보유 (5), 기술의 전문성 (5), 품질수준 (5) 경영자 능력 (15) 경영자능력 (5), 경영자자질 (5), 경영관리·노사화합 (5) 계획성 (10) 경영계획의 합리성 (5), 설비투자 장기계획 (5)
타 당 성 (40)	구조조정사업 계획의 타당성 (15) 시설시스템의 합리성 (5), 시설투자실적 (5), 설비계획의 합리성 (5) 기대효과 (15) 생산성 향상 (5), 품질개선 (5), 설비채산성 (5) 추진기반 (10) 작업의 표준화 (5), 전문인력 보유 (5)

4. 평가상 가점부여 대상기업

-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었거나 해제 예정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대(모)기업과의 수급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대(모)기업이 연대 보증하는 중소기업
- 지역협동기술센타에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추천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 NT마크 또는 EM마크 인증을 받은 기업
 - 100PPM 품질혁신운동 표본·인증 또는 달성기업
 - 세계 일류화 사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사업 참여기업
 -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부품·소재 공용화사업 참여기업
- 사업장내에 탁아시설을 설치한 중소기업
- 20인 이하의 소기업
- 지역특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 서울창업보육센터를 입주·졸업한 창업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또는 중소기업경영애로 지역대책협의회)에서 검토결과 창업 및 사업전환 등의 추진에 필요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을 추천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평가 및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우선 지원

중소기업 입지지원자금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사업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지원대상기업	○ 구청장의 아파트형 공장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
용자비율	조성자금의 범위내에서 건축공사비의 50% 이내
용자한도	20 억 원 이 내
금리	년 7 %
용자기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우선지원대상사업	○ 사업전환기업, 창업기업, 이전조건부공장, 무등록공장 ○ 민간사업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임대목적의 사업자, 사업장내에 탁아시설을 설치한 기업

※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은 당해지원액에 대한 채무를 승계받을 수 있으며, 이 때의 조건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에 대한 조건을 승계한다.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1. 지원대상자

구 분	지 원 대 상 자
시장재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시장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2. 건축법 등에 의해 시장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장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사업자 3. 건축법 등에 의한 시장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미 재개발·재건축중인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자 4. 기존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당해 정기시장을 상설시장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사업자 5. 정기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자 6.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허가시장이나 임시시장 등을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에 의한 시장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자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쇄화사업 가맹점·직영점 2. 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 3.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4. 기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지정연쇄화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5. 재개발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공동창고 건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쇄화사업자 또는 그 단체 2. 상업협동조합 또는 그 단체 3. 상점가진흥조합 또는 그 단체 4. 10인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창고를 건립하는 경우에 당해 중소유통업자 단체 5. 시장재개발 사업자

2. 지원대상 사업

구 분	지 원 대 상 자
시장재개발	- 기존 재래시장 등의 건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여 도소매 진흥법시행령 제8조(시장 등의 시설 및 운영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권고시설(당해 시장의 기능상 불필요한 시설은 제외)을 구비한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하는 사업 및 정기시장을 현대적 시설을 갖춘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 소규모점포의 기존시설 및 구조를 개선하여 점포시설을 표준화하고 현대적 시설·구조를 구비한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
공동창고 건립	- 조직화된 중소기업체들이 공동물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

3. 용자조건 및 지원한도

구 분	금 리	용자기간	용 자 비 율	용 자 한 도
시 장 재개발	년리 7%	8년 이내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건축공사비의 50% 이내 (다만, 시장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75%까지 용자지원 가능)	20억원 이내

구 분	금 리	용자기간	용 자 비 율	용 자 한 도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년리 7%	8년 이내 (3년저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공사비의 50%이내	2,500만원 이내 (다만,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공동창고 건립	년리 7% 이하	8년 이내 (3년저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건축공사비의 30% 이내	9억원 이내

※ 건축공사비의 범위 (시장재개발 및 공동창고 건립)

-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 건축공사와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따른 비용 (부지매입비 및 설비비는 제외)
- 시장 재개발사업자가 공동창고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건축, 기반공사비는 시장재개발에 따른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 가능

※ 시설공사비의 범위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 점포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내부시설 개조, 판매시설 및 정보화기기 등의 설치비용

4. 자금용도별 우선지원 대상 기준

구 분	지 원 대 상 자
시장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재개발 지원대상자 제1호 내지 6호의 순서로 우선지원 하되 재개발사업의 동의절차 및 입점상인 대책이 확정된 시장 또는 건물의 안전 등을 위해 재건축이 시급한 시장 등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쇄사업자의 직·가맹점 또는 상업협동조합,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인 점포로서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점포 - 연쇄화사업 직·가맹점 (상업협동조합, 상점가진흥조합 조합원 포함) 은 연쇄화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포보다 우선 지원 - 슈퍼마켓, 종합소매업 등은 전문점보다 우선 지원 -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요령에 의거 유통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자
공동창고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창고 건립부지를 확보한 조합·단체 - 연쇄사업자(상업협동조합, 상점가진흥조합 조합원 포함)는 연쇄화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포보다 우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신청서

신 청 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번호		
	③기업체 명						
	④주 소						
사업체 규모		⑤상시종업원			⑥자산총액	천원	
대상업종과품목		⑦업 종			⑧품 목		
⑨ 자격 요 건							
신 청	자금구분	⑩ 총소요액	⑪용자신청액		⑫ 비 율		
자 급							

위와같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와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199
신청인 (인)

귀 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공장등록증 사본 (제조업체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제조업체에 한함)
5.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6.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유망중소기업체에 한함)
7. 수출실적 증명서 (수출업체에 한함)
8. 아파트형공장 분양계약서 사본 (아파트형공장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9. 협동조합 가입확인서 (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 사업기간 :

○ 사업개요 :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소요자금 조달방법

- 자기자본

- 용 자

- 사 채

- 기 타

○ 용자금 상환계획

○ 기 타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결정통보서

1. 사업명 :
2.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업종		대출취급은행	

3.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자금용도	소요금액	용자결정액	용자조건		대출취급기한
			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연 %	8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실적 내역 (별첨)

(단위 : 천원)

지원실적	규격	수량	소요금액	용자결정액	비고
계					

※ 용자결정액 범위내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대출취급 기관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함

위와같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APT형공장 건설 자금 용자신청서

설 치 이 체 명	한 글		대 표 자	성 명 (한자)	
	한 자		자	주민등록번호	
구 분	[우편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D. D. D)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근 거					
설 립 목 적	1. 정부투자기관 4. 공공법인 2. 정부재투자기관 5. 기 타 3. 정부출연기관				
설 립 일 자					
상시 종업 원수	명				백만원
소요자금 (시설)	백만원	신청금액 (시설)	백만원		
위와 같이 APT형공장 건설자금을 용자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199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신청인 (인) </div>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3. APT형공장 설치허가 (신고) 서 사본 4. 건축허가서 사본 5.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6. 사업자등록증 사본					

APT형공장 사업계획서

1. 공장건설 추진일정표

가. 추진주체 (상호 : _____ , 대표자 : _____)

나. 건설계획 (부지면적 : _____ m², 건축바닥면적 : _____ m²)

구 분	199 년				199 년			
	1/4	2/4	3/4	4/4	1/4	2/4	3/4	1/4
부지조성공사								
건축공사								
기 타								

다. 연차별 건축계획 (건축연면적 : _____ 층 m²) (단위 : m²)

구 분	199 년	199 년	199 년	계
공 장				
부 대 시설				
기 타				
계				

2. 공장건설 개요

가. 유치업종

한국표준사업분류	업 종	품 목	업 체 수

나. 부지현황 (위치 :)

지 번	지 목	면 적	용도지역구분	소유자	토지사용 승낙 여부

다. 주변현황

전력인입 (m)		용수인입 (m)			
하수도인입 (m)		진입도로 (m)	폭		
			길이		
반 경 100m 이내 가옥수		주차장면적 (m ²)			
특기사항					

라. 동별현황

동별구분	주 용 도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승강수 (대수, 톤)

마. 층별현황

층별구분	용 도	유치업종	층 고	하 중 (m/톤)

3. 공장지원시설 계획

가. 부대시설 설치 계획

구 분	저 유 조	저 수 조	변 전 실	가 스 저 장 소	기 타
용 량 (m ³ /분)					
면 적 (m ²)					

나. 후생복지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식 당	휴게실	기숙사	목욕실	의료실	도서실	기 타
수용인원 (명)							
면 적 (m ²)							

다. 지원시설 설치 계획

구 분	창 고	사 무 실	주 차 장	기 타
공용면적 (m ²)				
전용면적 (m ²)				
전체면적 (m ²)				

라. 공해방지, 시설계획

구 분	배 출 량	공해방지시설 설치 계획
가 스 및 매 연	대 · 중 · 소	
소 음 및 진 동	대 · 중 · 소	
폐 수	대 · 중 · 소	
기 타	대 · 중 · 소	

※ 공해방지시설 설치계획도를 첨부할 것

다. 전력·용수 등 사용계획

용 수 (톤/일)	전 력 (kW/일)	연 료 (톤 / 일)		
		방카 (유)	가 스	기 타

4. 소요자금 내역

구 분	규 모	단 가	금 액 (천원)
1. 부 지	m'		
2. 설 계 용 역			
3. 조 성 공 사	m'		
4. 공 장 전 물 전 축	m'		
5. 기 계 설 비			
6. 부 대 시 설	m'		
- 지 지 변 용 기			
- 유 상 전 배 수 시	톤/일		
- 조 조 시 설 설 타			
7. 후 생 복 지 시 설	m'		
- 식 숙 당 사 타			
8. 환경오염 방지시설			
9. 시험 연구 시설			
합 계			

※ 공사준공일까지의 시설내역 및 소요자금을 기재
 ※ 부지가격 : 단가산정 근거서류 첨부 (매매계약서 등)
 ※ 공사비용 (3~9항) : 정부건설표준셈표에 의거 작성

5. 자금조달계획

가.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계
1. 대지매입비				
2. 공장건축비				
3. 부대시설설치비				
4. 기타공사비				
계				

나. 조달방법

구 분	소요자금	자기자금	타 인 자 금		기 타
			금융기관	중진공협동화사업	
시설자금					
운전자금					
계					

6. 입주계획

가. 분양 또는 임대가격 (㎡당 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지 하	1 층	2 층	3 층	4 층	이 상
공 장						
지원시설						
기 타						

나. 업종배치 계획

구 분	지 하	1 층	2 층	3 층	4 층	이 상
업 종 배치계획						

7. 고용계획

구분 업종별	계	사 무 직	생 산 직		
			기 술 자	기 능 공	단순노동자
당 해 지 역 예산고용인원					

※ 기술자는 기사2급이상의 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공계졸업자 이상을 말함
 ※ 기능공은 기능사보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공고졸업자 이상을 말함

8. 사업추진 계획

일 자	사 업 추 진 경 위	인 · 허 가 내 용

중소기업 유통구조개선자금 용자신청서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번호	
	③기업체명				
	④주소				
사업체규모	⑤상시종업원		⑥자산총액		천원
대상업종과품목	⑦업종		⑧품목		
⑨ 자격요건					
신청자금	자금구분	⑩ 총소요액	⑪ 용자신청액	⑫ 비 율	
<p>위와같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199</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 하</p>					
<p>< 구비서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협동조합 가입확인서 (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